

필리핀과의 협정(부속서 4-가 규칙 제9조)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

(제15조제22항제2호가목 관련)

상업 송장 또는 기타 물품 관련 서류에 기재할 문안	Origin Declaration I¹⁾ being the²⁾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in this commercial invoice are originating from³⁾ and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4(Rules of Origin) of the Korea-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. Observations/Findings⁴⁾: Authorization Code _____ Signature _____ Date: _____
작성방법	※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 1) 이름 및 직위를 표기 2) [exporter], [producer] 또는 [producer and exporter] 중 해당되는 것 기재 3) [the Republic of Korea], [the Philippines] 중 해당되는 것 기재 4) 신고 대상 물품 관련 수출 송장에 다음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, 신고서의 “특이사항/비고”란에 다음 정보를 기재 가. 물품의 수입자 나. 물품의 수출자(생산자와 다른 경우로 한정) 다. 물품의 생산자(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) 라.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마.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바. 원산지 신고일, 그리고 사. 협정 부속서 4-가 규칙 제9조의 규정대로 발급되는 포괄신고의 경우, 원산지증명서가 포괄하는 기간

